

2026년 인천광역시 「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 및 재정 지원」 공모 공고

「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」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인천광역시 「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 및 재정 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

인천광역시장

1

사업목적

- '공유(共有)'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(단체)을 공유경제 기업(단체)으로 지정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.

- 「공유」란

- 공간, 물건, 정보, 재능,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·경제적·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

- 「공유단체」란

- 공유를 통해 경제, 복지, 문화, 환경,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장에 지정된 단체 및 법인

- 「공유기업」이란

- 공유를 통해 경제, 복지, 문화, 환경,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장에 지정된 기업

- 「공유사업」 예시

- 주차 공간 공유 및 서비스 제공, 문화예술 공간 공유, 공유여행 호스트 및 프로그램 등 플랫폼 사업, 마을옷장 및 마을책방, 보드게임 공유, e품앗이 등 마을 공유사업, 공동주택 복셰어링 등

2

공모개요

- 공 모 명 : 『2026년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 및 재정 지원』
- 공고기간 : 2026. 3. 27.(금) ~ 4. 15.(수)
- 접수기간 : 2026. 4. 1.(수) ~ 4. 15.(수) 18:00까지
- 공모분야 : ①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, ②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
 - ※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은 '신규지정' 및 '재지정' (2023년 또는 그 이전 지정 기업(단체) 포함)
 - ※ 신규 재정 지원의 경우 반드시 공유기업(단체) 지정과 함께 신청
- 지원규모 : 50백만원(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)
 - ※ 지원 기업수 및 금액은 공모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공모대상 :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(단체)으로 인천시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는 기업(단체)
 - ※ 단, 공유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.
- 접 수 처
 -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 : 담당자 이메일(tmddnjs17@korea.kr) 제출
 -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 : www.losims.go.kr (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)
·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탐e) → 공모사업(검색) → 해당사업 클릭 → 신청서 작성 (우편·이메일·방문접수 불가)
- 제출서류 : [참고 1]
- 접수 기업(단체) 대면심사 또는 현장실사(필요시) : 2026. 4월 중
- 공유기업(단체) 지정 및 재정 지원 심사결과 발표 : 2026. 4월 중
 -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게재, 개별 통보
 - ※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.

□ 지정요건 : 아래 요건 모두 충족

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단체일 것(접수 마감일 기준)
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- 「민법」에 따른 비영리법인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
- 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
 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(예비)사회적기업
 -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
 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
 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기업

② '공유'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

《사회문제의 범위》

- 공공·민간 유희자원 활용
- 고령화, 청년주거, 공동체 와해,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관련 문제
- 과잉소비, 에너지 고갈, 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문제
- 경기침체, 청년실업, 조기은퇴 등 경제 관련 문제
- 문화소외, 문화프로그램 부족,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
- 교통체증, 주차장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
-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

③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고, 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것

- 재지정 신청 공유경제 기업(단체)의 경우, 최근 2년간(2024~2025년) 공유사업 실적 필수
- 공유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.

□ 지정결과

-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간(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)
- 지원내용 :
 - 공유촉진 사업 재정지원 신청 자격 부여
 -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기업(단체) 명칭 사용

□ 지정취소

- 지정 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경제 기업(단체)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《 취소요건 》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
2.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
3.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때
4.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
5. 지정 후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
6. 불법,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7.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8.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※ 인천광역시는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 후, 지정요건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정된 기업(단체)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.

4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천시 지정 공유경제 기업(단체)에 대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
 - 지원사업 :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
 - 플랫폼 운영, 홍보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‘자원공유’에 기여하는 사업 등

□ 지원자격

- 인천광역시 지정 공유경제 기업(단체)
 - ※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, 인천광역시 및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, **중복 지원 불가**

□ 지원규모

- 5개 내외 기업, 50백만원 이내(기업 당 지원한도 최대 20백만원 이내)

□ 지원분야

- 공유촉진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, 마케팅, 행사, 개발비 등

《공유촉진 사업비 사용불가 항목》

-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
-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집기 구입,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
- 기업(단체)의 총회,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
- 식비, 다과비, 자산취득을 위한 경비
-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

※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용 가능

□ 사업비 지급, 사업평가 및 정산

- 사업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·제출하고 사전에 市の 승인을 받아야 함.
- 지정된 공유경제 기업(단체)과 인천광역시가 사업추진협약(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로 갈음)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
- 총사업비(보조금+자부담)의 10% 이상은 자부담 편성
(총사업비 中 자부담분 비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)
- 공유촉진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규정에 의거 지급
-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 전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.(일부 위탁은 가능)
- 사업비 교부 이후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임하여야 함.
-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(집행내역 등) 제출(2027. 1월말까지)

□ 사업비 환수

- 공유촉진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유경제 기업(단체)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.
- 당초 계획사업의 70% 미만 수행 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.
※ 천재지변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외
-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,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.

5

심사 및 결과 발표

□ 심사방법

-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 : 서류 및 대면심사(필요시 현장실사)
-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: 서류 및 대면심사
 - ※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

□ 심사기준

-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

항 목	세부평가 항목	배 점
공유 확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유활동 관련성, 공유확산 플랫폼 운영 · 공유활동 실적, 활동계획의 타당성 	40
지속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무구조 적정성 * 부채비율, 현금비율,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등 · 시장성, 성공사례 등 수익모델 적정성 · 관련 공유활동의 관련법, 제도적 저촉 여부 · 사업의 장기(5년 이상) 계획수립 여부 및 적정성 	30
사회 연관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· 다양한 주체(기업/단체/개인)와 협력 정도 ·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	30

-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

항 목	세부평가 항목	배 점
공유촉진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유사업 관련성 · 사업비 지원의 공유촉진 효과 	30
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세부 활동 전략의 구체성·차별성 · 활동계획의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·실행가능성 · 활동방안의 적정성·효과성 · 사업비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	30
사업수행 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적정인력 구성, 유사사업 추진실적, 재무구조의 적정성 	25
사회 연관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· 다양한 주체(기업/단체/개인)와 협력 정도 ·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	15

□ 공유경제촉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

- 공유경제촉진위원회 : 2026. 4월 중 개최 예정
 - (필요시) 개최 전 접수 기업(단체) 대면심사 또는 현장실사
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: 2026. 4월 말 예정
 - 심의 결과에 따라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 여부 최종 결정

□ 결과발표

-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
 - ※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.

6

기타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」,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.
-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.
- 인천광역시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.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-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.
-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.
-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☎ 032-440-4914) 문의 요망

붙임 :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1부.

참고 1

제출서류 목록

구 분	제출서류
공유단체 지정 신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1부. 【서식 1】 2. 공유단체 재지정 신청서 1부. 【서식 1-1】 3. 신청 단체 소개서 1부. 【서식 1-2】 4.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1부. 【서식 3】 5. 개인(단체)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개인(단체)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 【서식 5】 6. 지정요건 확인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영리민간단체 :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. - 비영리법인 :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. 7.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지정 신청 공유기업(단체)의 경우, 최근 2년간(2024~2025년) 공유사업 실적 필수 - 관련 계획서, 자금집행 내역서, 사진·동영상, 홍보물, 언론보도 기사 등 8. 심사와 관련된 자료(각 항목 모두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. -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사본 각 1부. -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서 각 1부. - 전년도 결산서 1부. 9. 기타 작성 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
공유기업 지정 신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1부. 【서식 2】 2. 공유단체 재지정 신청서 1부. 【서식 2-1】 3. 신청 기업 소개서 1부. 【서식 2-2】 4.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1부. 【서식 3】 5. 개인(기업)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개인(기업)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 【서식 5】 6. 지정요건 확인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. - (예비)사회적기업 :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. - 마을기업 :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. - 협동조합 :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. - 사회적협동조합 :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. - 자활기업 :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1부. 7.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지정 신청 공유기업(단체)의 경우, 최근 2년간(2024~2025년) 공유사업 실적 필수 - 관련 계획서, 자금집행 내역서, 사진·동영상, 홍보물, 언론 보도 기사 등 8. 심사와 관련된 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(개인사업자는 제외). -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서 각 1부. 9. 영업수익 및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각 항목 모두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계사,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(현금출납부,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).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) -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
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 신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부. 【서식 4】 2.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계획서 1부. 【서식 4-1】 3. 공유촉진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. 【서식 4-2】 4. 기타 증빙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(필수)

※ PT용 사업계획서 준비 : 별도 양식 없음, 10장 내외, PDF로 저장 제출

※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 신청은 공유경제 기업(단체) (재)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